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2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다크패턴 정의와 유형	2
2.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4
3.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리자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 행위로 의제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1. 8.

다. 회부연월일 : 2026.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일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가입은 간편하게 하면서 해지 절차는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시와는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다크패턴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다크패턴 정의와 유형

-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 ‘다크패턴(Dark Patterns)’¹⁾은 동의 없는 부가통신서비스 자동 갱신, 유료 전환 등의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크패턴 행위의 핵심적 적용 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다크패턴은 ① 숨은 갱신 등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인 **편취형**, ② 거짓 할인 및 추천 등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인 **오도형**, ③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도록 유도하는 **방해형**, ④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인 **압박형**으로 구분됨.

1)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영국의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2010년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해리 브링널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다크패턴이라고 정의함.

<다크패턴의 범주와 유형>

범주 구분	내용	세부 유형
편취형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숨은 갱신 ◆ 순차공개 가격책정 ◆ 몰래 장바구니 추가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거짓 할인 ◆ 거짓 추천 ◆ 유인 판매 ◆ 위장 광고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 숨겨진 정보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압박형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반복간섭 ◆ 감정적 언어사용 ◆ 시간제한 알림 ◆ 낮은 재고 알림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2023. 7.

2. 다크패턴을 활용한 이용자 의사결정 방해행위 금지 등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해당 행위를 벌칙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및 제99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 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 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	제50조(금지 행위) ① ----- -----한 정하며, 제12호의 경우에는 부 가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 ----- ----- ----- ----- -----

현행	개정안
여서는 아니 된다. 1. ~ 11.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 이용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사이의 매개체가 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절차보다 변경·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부가통신서비스의 가입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변경·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u> ③ (현행과 같음) 제99조(벌칙) ----- ----- -----. 1. ~ 4. (현행과 같음) 5. -----

현행	개정안
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 ----- ----- -----제5호의2·제1 2호의-----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부가통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별도로 규정²⁾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 11개의 유형을 명시³⁾하면서, 이를 위반할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⁴⁾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① 이용약관과 다르게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미고지 또는 거짓 고지하는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4)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위와 같이 간접적 피해를 미치는 행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디지털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부가통신서비스가 확산되고 있
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모티콘 서비스
가 자동 결제되거나,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정기 구독 해
지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계되는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권
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가통
신사업자의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이용자
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
는 것으로, 가입·해지 등 서비스 관련 핵심 절차에서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
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벌칙대
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약관과 상이한 서비스 제공,
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형의 금지행위로 보이므로, 현행법 체계와 같이

다크패턴 금지행위에 대하여 형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개정안과 같이 벌금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사실조사⁵⁾,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⁶⁾, 과징금 부과⁷⁾ 대상이 되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충분한 제재수단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을 구체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의무 불이행 시에는 사실조사, 금지행위에

-
- 5)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2조의13제8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의12제1항, 제32조의13제2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4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의15제2항·제3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6)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통신업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업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7)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한 조치, 과징금 등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다크패턴이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명시하거나,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여 규정함으로써 규제가 예상되는 법률 내용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 ‘가입방법과는 다른방법’,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 등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다크패턴을 정의하고 있어, 그 의미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또한,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화 등의 가격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거나,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전자상거래에서 금지되는 다크패턴을 구체적으로 규정⁸⁾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이버몰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가격을 알리는 표시·광고의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재화등의 가격 외에 재화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이 진행되는 중에 소비자에게 다른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직접 청약의사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청약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하여 선택항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다른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행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 다크패턴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크패턴은 그 성질상 금지행위 유형 제5호의2(중요사항 미고지·거짓고지 등)와 유사하게 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중요사항 미고지 등과 같이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추가로, 다른 금지행위 유형과 같이 세부 유형을 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미

-
- 3.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구매·이용, 회원가입, 계약체결 또는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이하 “구매등”이라 한다)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시하는 경우 그 선택항목들 사이에 크기·모양·색깔 등 시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두어 표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소비자가 특정 항목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나. 소비자가 구매등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정 항목을 반드시 선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취소, 회원탈퇴, 계약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
 - 가.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절차보다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의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방법
 - 나. 재화등의 구매, 회원가입, 계약체결 등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만 그 취소, 탈퇴,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법
 - 5.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아니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크패턴에 관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어, 개정안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타 법령에 규정할 경우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 부처간 혼선 및 행정력 낭비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법문언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계정 도용 방지 등 정당한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 설계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지는 가입과 달리 환불·정산·데이터 삭제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어 그 절차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고, 「전자상거래 등에
-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규제와의 중복으로 인한 이중규제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명확성의 원칙 준수를 위하여 법문언의 구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중복 규제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대리자의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 행위로 의제

가. 주요내용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변경 등을 대리하는 자가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여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금지 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 -----제 5호의2· 제12호의-----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영업을 체결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의 행위가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 제공 및 중요한 사항의 미고지·거짓고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도록 규정⁹⁾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이용자와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려는 것으로,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현행법은 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대리영업 계약을 체결한 자의 중요사항 미고지·허위 고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인데, 사업 특성이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한 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의 입법 실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주로 모바일 앱의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다크패턴의 사용 가능성은 높으나, 이러한 사업자들이 대

9)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② 대리점, 판매점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리점 등과 대리영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혼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행법의 의제 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법 위반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한 것으로 의제하여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는 대리점, 판매점을 통한 영업 형태에 준해서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부가통신서비스의 영업 관행이 변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 종합적으로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현행법상 의제 규정의 취지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업무 구조 특성에 따른 입법 실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